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(특허청)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에 관한 고시

◇ 제·개정 이유

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에 관한 고시의 목적 및 인용관련 규정 명칭을 명확히 하고, 전자문서 대상에 관한 조문을 제1조에서 제2조로 변경하였고,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가. 고시의 목적 및 인용 관련 규정 명칭 명확화(안 제1조)

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에 관한 고시의 목적 및 인용 관련 규정 명칭을 「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으로 명확히 함

나.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대상이 되는 조문 변경(안 제2조)

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관련 조문을 제1조에서 제2조로 변경

다. 재검토기한 재설정(안 제3조)

고시의 재검토기한이 경과하여 타당성 검토 후 재검토기한 재설정